

인터파크통영씨어터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시설 운영 지침

제정 2019. 10.

개정 2020. 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인터파크통영씨어터 통영리스타트플랫폼 공간 운영 지침」에 의거 통영리스타트플랫폼 시설(이하“시설”)의 사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 시설 운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범위) 플랫폼 내 시설(부대설비 포함)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시설은 사용신청을 통해 대여를 받아 사용하는「대여시설」과 이용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공용시설」, 기타 「부대시설」및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으로 한다.
2. 장비의 경우 별도의 장비운영 지침에 따라 범위를 정하고 관리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 플랫폼 시설은 제2조에 따라 「대여시설」, 「공용시설」, 「부대시설」, 「물품」으로 분류하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갤러리 영 : 1층 1개실
- 나. 아트홀 통 : 1층 1개실 120석 규모
- 다. 미디어실 : 3층 1개실 20석 규모
- 라. 세미나실 : 3층 5개실(실별 규모 상이)
- 마. 회의실 : 4층 3개실(실별 규모 상이)

2. 「공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휴게공간 : 3~4층 각 1개소
- 나. 탕비실 : 1~4층 각 1개소
- 다. 우편함 및 무인택배함 : 4층 1개소

3.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인포데스크 : 1층 1개
- 나. 주차공간 : 지상 1층 20대 규모(장애인 전용 1대 포함), 인근부설주차공간(미정)

4.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층

- ① 공연장 : 이동식 무대, 공연용 의자 등 공연 진행을 위해 제공하는 물품
※ '아트홀 통 장비목록' 참조
- ② 기타 플랫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나. 2층

- ①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다. 3층

- ① 영상 : 프로젝터, 스크린, 컴퓨터, 전자교탁 등
- ② 소모품 : 리모컨, 각종 케이블 등
- ③ 기타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라. 4층

- ① 영상 : 프로젝터, 스크린 등
- ② 편의용품 : 냉장고, 정수기 등
- ③ 기타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5.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추가 및 삭감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통영리스타트플랫폼 공간 운영 지침」제4조에 따라 운영된다.

제5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공간별 대관운영 지침에 따르며, 기타 부가사항은 별도협약에 따른다.

제6조(사용 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다음과 같이 주의 의무를 다하고, 시설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

- 1.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이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고, 운영자의 확인 후 퇴실 하여야 한다.
- 3. 이용자가 제1항의 사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하여 훼손 또는 망실의 손해를 유발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제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또는 행사
- 2.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또는 행사
- 3. 정치선전, 특정 종교적 색채가 짙은 행사, 사회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사
- 4. 기타 플랫폼 운영상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사용신청) 시설 사용은 신청제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는 시설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 2. 대여시설 사용신청을 접수 받았을 때 이를 검토한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3. 신청 및 접수 처리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4. 플랫폼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신청 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대여신청 및 예약방법) 대여신청 및 예약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실

- ① 신청방법 : 통영리스타트 플랫폼 홈페이지 사전 신청
※ 공간대관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제출 필수
- ② 신청대상 : 제한 없음
- ③ 예약가능시간 : 사용 일시로부터 2개월 ~ 1주 전까지 예약 가능
※ 내부 교육 일정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공실일 경우 사용예정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④ 대관료 : 7,700원/시간(VAT 포함)

2. 세미나실 #01~#05

- ① 신청방법 : 통영리스타트 플랫폼 홈페이지 사전 신청
※ 공간대관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제출 필수
- ② 신청대상 : 제한 없음
- ③ 예약가능시간 : 사용 일시로부터 2개월 ~ 1주 전까지 예약 가능
※ 내부 교육 일정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공실일 경우 사용예정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④ 대관료
가. 세미나실 #03 : 7,700원/시간(VAT 포함)
나. 세미나실 #01, #02, #04, #05 : 5,500원/시간(VAT 포함)

3. 회의실 #01~#03

- ① 신청방법 : 통영리스타트 플랫폼 운영사무실 현장 예약
※ 공간대관 신청 시 '회의실 현장예약대장' 작성 필수
- ② 신청대상 : 4F 창업LAB 입주단체
- ③ 예약가능시간 : 사용 당일 예약 가능
- ④ 이용안내 : 1일 최대 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자가 없을시 사용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팀원이 돌아가며 중복예약불가)

4. 아트홀 통 및 갤러리 영 공간은 별도 대관규정에 따름

제10조(대여 우선순위) 대여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플랫폼 자체프로그램에 우선 대여하고, 이하 타 기관 및 개인의 대여 신청은 운영상 필요 및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1조(대여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여를 하지 않는다.

1. 대여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리,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여 조건을 어겨 대여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사용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4. 대여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2조(대여내용의 변경) 운영상 필요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이미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신청제한 및 취소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여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가. 시설을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 나. 플랫폼이 보유한 시설 및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적정한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신청자가 속한 산업분야 및 시설 설립목적과 행사목적 부적합 등)
 - 다. 기타 대여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사
2.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행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가. 대여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 나. 대여조건 및 사용 주의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다. 부가사항 별도협약을 위반한 때
 - 라.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제1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시설을 대여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대여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용자는 대여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 후에는 대여시설 및 사용물품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의 반입, 설치, 철거 시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이용자는 「물품」 및 기타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사항을 이용하고자 할 때 운영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재난 및 도난·분실, 상해 등 안전사고(인적·물적)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 시설의 훼손 및 망실 등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플랫폼이 정한 기준에 의거, 시설을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9.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10. 사용 승인된 대여시설 및 사용물품의 양도는 불가하며 적발시에 장비 회수 및 계

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광고, 홍보문의 협의) 이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플랫폼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방법) 시설을 훼손 및 망실했을 때에는 동일 현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완료 후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